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2024. 12. 3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 조사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여 헌법기관을 난입·무단 점거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강화를 위해 벌인 사건으로써 그 어떤 사건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검찰, 군검찰, 경찰 및 공수처가 경쟁적·산발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극도의 헌정질서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임.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12·3 계엄 사태의 본질인 내란혐의를 조사하고,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확인한 후, 국회가 당장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조사범위

가.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나.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다.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라.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마.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바.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사.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아.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자.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차.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사항

타.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파.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하.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거.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

다.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위원회의 국정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문회 개최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위원회의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음. 인원은 간사 간에 협의하여 정함.

사.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

4. 조사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포함), 대검찰청(특별수사본부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포함), 합동참모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포함), 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서류등의 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음.

나. 증인 및 참고인

-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

5. 조사기간 : 2024. 12. 31. ~ 2025. 2. 13. (45일)

가. 예비조사기간 : 2024. 12. 31.부터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나. 기관보고 :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다. 현장조사 : 현장검증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라. 청문회 :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마.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6.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가. 위원 수 : 18인

나. 위원 배분 : 10(더불어민주당) : 7(국민의힘) : 1(비교섭단체)

다. 구성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 고
위원 (18)	더불어민주당 (10)	안 규 백 한 병 도 김 병 주 민 병 덕 민 홍 철 박 선 원 박 지 원 백 혜 련 윤 건 영 추 미 애	(위원장) (간사)
	국민의힘 (7)	김 성 원 강 선 영 곽 규 택 박 준 태 임 종 득 주 진 우 한 기 호	(간사)
	비교섭단체 (1)	용 혜 인	

라. 직 원 : 23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국 방 위 원 회 (13인)	수 석 전 문 위 원	오 명 호	
	전 문 위 원	류 승 우	
	행 정 실 장	신 세 민	
	입 법 조 사 관	김 용 우	
	입 법 조 사 관	김 대 은	
	입 법 조 사 관	길 기 혁	
	입 법 조 사 관	조 정 일	
	입 법 조 사 관	김 영 훈	
	입 법 조 사 관	황 태 율	
	행 정 관	고 형 태	
	주 무 관	김 윤 진	
	주 무 관	강 량 인	
	주 무 관	박 성 희	
국 회 운 영 위 원 회 (3인)	입 법 조 사 관	설 그 린	
	주 무 관	최 선 아	
	주 무 관	우 지 현	
법 제 사 법 위 원 회 (2인)	입 법 조 사 관	정 수 정	
	입 법 조 사 관	이 상 민	
행 정 안 전 위 원 회 (3인)	입 법 조 사 관	전 성 민	
	입 법 조 사 관	구 진 회	
	입 법 조 사 관	김 형 래	
정 보 위 원 회 (1인)	입 법 조 사 관	이 수 진	
국 회 사 무 처 (1인)	행 정 사 무 관 시 보	최 승 표	

7. 소요경비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름.

8. 기타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 (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